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 및 군인과의 대비(對比) 기준(제4조 관련)

일반군무원의 계급					
일반군무원 (전문군무 경력관, 전 문임기제군 무원 및 한 시임기제군 무원은 제 외한다)	전문군무 경력관	전문임기제 군무원	한시임기제 군무원	법 제38조제1항 에 따라 징계권 자를 정할 때 군인과의 계급 대비	비 고
1급	가군 (32호봉 이상)	가급		소장	1급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 람 또는 소장으 로 근무한 경력 이 있는 사람
2급				준장	
3급				대령	
4급	가군 (21호봉 이 상 31호봉 이하)			중령	
5급	가군	나급	5호	소령	
				대위	5급에서 4년

					이상 재직한 사람
	(20호봉 이하)			중위	5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소위	
6급	나군 (24호봉 이상)	다급	6호	준위	
7급	나군 (23호봉 이하)	라급	7호	원사	7급에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상사	
8급	다군 (25호봉 이상)	마급 (봉급 한계액의 6할 초과)	8호	중사	
9급	다군 (24호봉 이하)	마급 (봉급 한계액의 6할 이하)	9호	하사	